

<꿈의 오케스트라, 영월> 교육단원 모집 재공고

(재)영월문화재단에서는 지난해에 이어 아동·청소년들이 오케스트라 합주 활동을 통해 긍정적 자존감과 공동체적 인성을 갖춘 밝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돋는 한국형 엘리스테마 교육사업인 <2021 꿈의 오케스트라, 영월>을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함께 활동할 추가 단원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이에 관심 있는 아동·청소년 및 학부모님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모집 개요

- 모집대상 : 영월 관내 초등학교 1~6학년

사회취약계층 우선 선발(※ 별첨 참조)

악기 연주 경험이 없는 아동 중심으로 선발

- 모집인원 : 총 22명

- 모집방법 : 상시접수

※ 파트별 악기 선택은 본인이 할 수 없으며, 음악감독 및 전문강사 등의 회의결과에 따라 정해진 악기를 연주해야 함

2021년 4월 08일

(재)영월문화재단 이사장

○ 사업 개요

- 사업명 : 꿈의 오케스트라 '영월'
- 교육기간 : 2021년 4월부터 계속
- 교육장소 : 아르코연습센터(강원도 영월군 북면 영월로 1246)
또는 영월문화예술회관(강원도 영월군 영월읍 단종로 24)
단, 연주회 및 특별활동 등 진행시에는 예외
- 교육일시 : 화, 목요일(주2회) / 오후 4시~7시(3시간)
- 교육내용 : 오케스트라 교육을 통한 정서함양
앙상블, 전체 합주 교육 등을 기준으로 전체 합주와 앙상블 합주,
악기별 파트별 교육비율을 적절히 배합하여 실시
연 2회 연주회 / 캠프 및 연주회 관람 등 다양한 활동 실시 예정
- 교육비 : 전액무료(악기 무료 제공 및 전문학사 이상 강습)
- 주최 : 문화체육관광부
- 주관 :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영월문화재단
- 후원 : 영월군

○ 제출 서류

- 지원서 1부(별첨)
- 주민등록등본 1부
- 보호자 동의서 1부
- 사회취약계층 증명서 1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 접수방법 : 직접 방문 또는 이메일(skdlxm5965@ywcf.or.kr) 접수
 - * 이메일 지원자는 제목을 <꿈의 오케스트라_아동 이름>으로 제출
- 문 의 : (재)영월문화재단 <꿈의 오케스트라, 영월> 담당자(033-375-6237)
강원도 영월군 영월읍 단종로 24(영월문화예술회관 1층)

○ 참고사항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허위사실이 발견된 경우 합격을 취소함
- 지원 서류상의 기재착오, 서류미제출, 누락 또는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지원자의 책임임
- 최종합격자가 포기하거나 결격사유가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차점자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함
- 중도에 교육포기 학생이 발생할 것에 대비하여 모집인원의 20% 범위 내에서 예비자를 선발하며 결원 시 순서에 의거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
- 적격자가 없을시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재공고하여 선발할 예정
- <꿈의 오케스트라, 영월> 밴드(회원 가입 후 이용)

※ 취약계층 범주

※ 취약계층 유형별 세부 사항

- 서류 발급 문의: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보건복지콜센터 ☎129)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 참고

구분	비고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p>「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그 자녀 - '수급권자'란 법에 따른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p>					
차상위 계층	<p>「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 계층 또는 그 자녀 -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않는 계층으로서 소득인정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인 계층</p>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기준중위소득	1,827,831	3,088,079	3,983,950	4,876,290	5,757,373	6,628,603
생계급여	548,349	926,424	1,195,185	1,462,887	1,727,212	1,988,581
의료급여	731,132	1,235,232	1,593,580	1,950,516	2,302,949	2,651,441
주거급여	822,524	1,389,636	1,792,778	2,194,331	2,590,818	2,982,871
교육급여	913,916	1,544,040	1,991,975	2,438,145	2,878,687	3,314,302
※ 차상위분인부담경감증명서 확인						
조손 가정의 자녀	- 조부모와 만 18세 이하인 손자녀로 구성된 가정					
소년·소녀 가장						
다문화 가정의 자녀	<p>「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 및 제14조의2에 따른 다문화가정의 자녀 - 결혼이민자(국적법에 따른 귀화허가를 받은 자를 포함)와 출생시부터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단, 결혼 이전에 외국 국적을 가진 친부(모)가 한국 국적을 포기한 사실이 있는 경우 지원 자격을 인정하지 않음) - 다문화가족이 이혼 등의 사유로 해체된 경우에도 그 구성원이었던 자녀에 대하여 지원 자격 인정</p>					
북한이탈주민 또는 그 자녀	<p>「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 이탈 주민 또는 그 자녀 - '북한이탈주민'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사람</p>					
한부모 가족 보호대상자	<p>「한부모 가족 지원법」 제5조에 따른 한부모 가족 보호대상자 - '한부모가족'이라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을 말하며, 지원대상자는 여성가족부장관이 최저생계비·소득수준 및 재산 정도를 고려하여 정함 ※ 일반 모자가족(모가 세대주) 또는 부자가족(부가 세대주)과는 구분 필요</p>					
도서·벽지 거주자	<p>「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제2조에 따른 도서·벽지의 거주자로서 도서·벽지의 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자 - '도서·벽지'란 지리적·경제적·문화적·사회적 혜택을 받지 못하는 지역을 말하며, 산간지역/낙도(落島)/수복지구(收復地區)/접적지구(接敵地區)/광산지구(礦山地區)를 말함</p>					
장애인의 자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의 자녀					

다자녀 가정의 자녀	「다자녀 가정(3자녀 이상) 자녀」
보훈자의 자녀	<p>「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 22조에 따른 교육지원대상자 ※ 교육지원대상자로 통보되거나 '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 제출자 교육지원대상자 외 「국가보훈기본법」 제3조제2호의 국가보훈대상자 또는 그 자녀 ※ 교육지원대상자 외 '국가보훈대상자 확인원' 제출자</p>
특수교육대상자	<p>「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사람으로,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특수교육 필요로 하는 사람 - 시각장애 / 청각장애 / 정신지체 / 지체장애 / 정서·행동장애 / 자폐성장애 (이와 관련된 장애를 포함한다) / 의사소통장애 / 학습장애 / 건강장애 / 발달지체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
아동복지시설 재원자	<p>「아동복지법」 제3조제10호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받는 아동</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복지시설'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기초자치단체장에게 신고를 하여 설치된 시설을 말함
학교장 추천자	<p>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차상위계층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가정형편이 어렵다고 학교장 또는 자치단체장이 판단·추천한 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양의무자의 갑작스러운 실직으로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실업급여 수혜 가정 등) - 가계 파산 또는 재산 압류 등으로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 부양의무자의 질병·사고·장애 등으로 인해 근로능력이 없거나,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 부양의무자가 자영업자로 폐업·휴업 등에 따른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자치단체장 추천자	<p>※ 기관별 5명 이하(필수사항)</p>